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6. 15.

남 해 군 수

1. 영업시간의 제한

가. 선외기 설치어선 및 레이더 등 야간항해장비 미설치 낙시어선

- 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 (기상청 발표기준)

나. 레이더 등 야간항해 장비 설치 낙시어선

- 22:00 ~ 익일 03:00

※ 단, 레이더 등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한 3톤 이상{선(내)외기 설치어선 포함}의 낙시어선에 대하여는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가능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소형낙시어선의 기준 : 소형낙시어선의 기준은 총톤수 3톤 미만의 낙시어선으로 한다.

3. 영업구역 제한

가. 낙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 및 구역에서 낙시객으로 하여금 낙시어선 선상에서 낙시를 하게 하거나, 낙시를 하는 장소에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

2) 야간 어로 및 항해제한·금지수역

3) 무인도서 중 상주면 세존도

4) 간출암

5) 선외기 및 레이더 미설치 소형낙시어선은 남해군의 육지부(유인도서 포함)를 기점으로 하여 바다 쪽으로 직선거리 3마일 이상 해역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낙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

7)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상 잡종선(목재류, 합

성수지 등)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

4. 안전운항 준수사항

- 가.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사하는 장치(V-PASS)를 갖추고 이를 작동시켜야 한다.
- 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고장 또는 분실로 사전에 신고한 경우 예외로 한다.
- 다. 낚시어선업자는 어선법 제5조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고 작동시켜야 하며 사고발생 시 어업정보통신국 또는 해양경찰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라.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와 안개 등으로 해상에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밖의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 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항을 금지 한다.
- 마.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제2항의 승선자명부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바.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 가. 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승객,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등)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 나.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각호 승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자(선원포함 이하 같다)로부터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
 - 2)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3) 낚시어선의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한 후, 미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바)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 5)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포획·채취금지체장(체중)을 준수하고 포획·채취 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 7)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 8)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9)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 낚시어선어업자는 각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 장치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2)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이 승선할 경우 승객의 준수사항과 대피명령을 할 경우 이에 즉각 응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 3)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한 때에는 낚시객과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낚시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가) 낚시 객과 상호연락 체계 유지를 위해 낚시객의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장비를 확인(기록)하여야 하며, 통신이 불가능 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출입항 신고 시 지점별 하선 인원을 신고하여 낚시 객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 4) 낚시어선업자가 낚시객을 승선시켜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으로 안내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소방서 등에 인명대피 요청 신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낚시어선업자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쓰레기 및 폐기물의 불법투기방지를 위해 폐기물수거통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수거 식 간이변기를 1식 이상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분뇨를 저장 또는 위생처리하기 위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설비(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어선은 제외한다.
- 7)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승선자 명부작성을 요구하고 허위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8)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6. 기타 제한사항 : MIFDA에서 시행하는 지정해역 점검기간에는 지정해역 내에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 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고시 제2014-51호는 폐지한다.

[별표 1]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설비
1. 구멍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멍조끼. 이 중 20%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멍부환 다.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멍줄 1개 이상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낙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다. 핸드레일 라.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마. 자기전화등 1개 이상 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별표 2]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 검은색

2) 바탕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
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 예시]

승선정원 명

승객준수사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객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승객,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등)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각호 승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자(선원포함 이하 같다)로부터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
- 2)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3) 낚시어선의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한 후, 미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바)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 5)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포획·채취금지 체장(체중)을 준수하고 포획·채취 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 7)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 8)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9)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